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 (11월)

1. 관련 : 중앙방역대책본부-2622(2020.11.2.)

- 2. **입국일 기준 11.1일부터 30일까지 적용**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 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안내(11월) 1부.
 - 2.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치료비 지원 국가 현황(11월) 1부. 끝.

교 육 부 장

교육부 장반인

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시도교육청, 소속기관, 소속단체

협조자

시행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 ((2020.11.4.)) 접수 ()

위 30119 서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동 / https://www.moe.go.kr

전화 044-203-7147 전송 044-203-7023 / dldnwjd0120@korea.kr / 비공개